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군형법」상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했으나, 앞으로는 강제추행과 구분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추행에 대한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,

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, 성희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1. 14. ~ 12. 24.,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”를 “징계”로 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란 및 타목란을 각각 타목란 및 파목란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카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성 관련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 힌 경우	파면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-견책
---	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별표 1 제10호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성 관련 비행	별표 1의3과 같음
------------	------------

별표 1 비고 제7호부터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비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비고 제7호(종전의 제6호)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1호가목”을 “제1호타목”으로 한다.

6. 제1호가목에서 “피해자 등”이란 성 관련 비행 피해자와 그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

고, “2차 피해”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제3호가목·나목·다목에 따른 피해(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)를 말하며,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가목을 적용한다.

별표 1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개별기준

징계사유		징계기준		
		가 중	기 본	감 경
성폭력	강간	파면	해임	강등-정직
	강제추행	파면-해임	강등	정직-감봉
	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그 밖의 성폭력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
성매매		파면-강등	정직	감봉
성희롱		파면-강등	정직-감봉	감봉-견책
추행		파면-강등	정직-감봉	감봉-견책
성폭력 목 인·방조행 위	지휘관	파면-해임	강등-정직	감봉
	그 밖의 사람	해임-강등	정직	감봉-근신

※비고

1. “성폭력”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2. “카메라등이용촬영”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(미수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3. “성매매”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4. “성희롱”이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.
5. “추행”이란 「군형법」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6. “지휘관”이란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.
7. 강간,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성폭력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2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품위	가. 성폭력	강등 ~ 군기교육	감봉 ~ 휴가단축
-------	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

유지	나. 성희롱	강등 ~ 감봉		휴가단축 ~ 견책	
의무	다. 그 밖의	강등 ~ 군기교육	군기교육 ~ 감봉	휴가단축 ~ 근신	근신 ~ 견책
위반	비행사실				

별표 2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비고 제2호 및 제1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및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

제3조(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상참작) ① ~ ③ (생략)	제3조(정상참작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<u>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</u>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징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